

##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서 포함)를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16.

###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평택지청

1. 건 명 :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대상 및 내용 : 불임(공시송달 명단 참조),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
4. 공 고 기 간 : 2026. 6. 16. ~ 2026. 6. 30.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대상자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평택지청 지역협력과 (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, 1층)에 방문하거나 구술 또는 우편 · FAX(0503-8803-0130)를 이용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6. 문 의 :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평택지청 최인혜 수사관(전화 031-646-1282)

【붙임】

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

( 공고기간 : 2026. 6. 16. ~ 2026. 6. 30. )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박*훈	'64.12.23.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*-*-*	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 미신고 ○ 부정수급액 등 총 반환명령액: 1,518,000원	거주불명

2026. 6. 16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

